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0호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등 상비약을 구입하는 것이 용이해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pooh72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4.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16호, 2016.5.29., 일부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55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이하 중략>